

시론

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8:2의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비중을 지방세 확충을 통하여 7:3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자주재원주의에 근거한 재정분권을 실현하지 않고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헛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주재원주의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할 때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정책대안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이다. 현재 재산과세 비중이 가장 큰 상태이지만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으로서 소득, 소비 관련 과세 확충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세수신장성, 세수의 지역 기반성, 그리고 지방세무행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방소비세가 중요하다. 이는 지역혁신, 고령사회의 개인서비스 등과 관련된 지자체의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효과적·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재원지원 방안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지방세 구조의 개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특히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확대할 우려가 있는 등으로 인해 어려운 과제는 분명하다. 하지만 세원(재원)배분에서 세원의 지역 분포(점유)요소를 적용하는 비율과 재정력 요소를 적용하는 비율을 적절히 조정할 경우 지방의 자주재원확충과 재정균등화 효과가 병행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도입 방안으로서 부가가치세의 10%를 징세지주의와 재정력 등 조정계수를 혼합하여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은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세수가 편중될 우려가 있어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점진적 및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으로 요구된다. 즉, 자주재원 확충이 창출하는 재정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재원의 배분에서 “세원의 분포 요소”와 “재정력 요소”의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소비세를 먼저 도입하되 세원점유비중 요소를 적용한 배분비율은 지방재정의 형평성이 일정 수준 확보되는 단계에 따라 처음 20% 정도만 적용하고 이후 재정균등화 정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60%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세원이양에 따라 세수입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대하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교육재정과 같은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무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징세지주의에 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와 같은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지만 교부세와는 분명 다른 성격을 갖는다. 자주재원주의적 원칙을 반영하면서 불균등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때 아무리 불균등성을 완화시키려 해도 지역간 불균등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공동체정신에 바탕을 두고 수평적 조정제도(역교부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촌과 도시지역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정신이 무